

신입학

제5조(입학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편입학

제11조(편입학 인원.자격) ①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편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학위과정 | 편입학기 | 전적대학원 | |
|------|------|--------|---------|
| | | 등록학기 | 이수학점 |
| 석사 | 2 | 1학기 이상 | 6학점 이상 |
| | 3 | 2학기 이상 | 12학점 이상 |

휴학

제17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2.군입대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3.모성보호휴학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재입학

제13조(재입학의 허가)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 초 등록 기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학의 불허)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

제15조(재입학의 절차) ①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과과정 및 학점취득

제32조(최소이수학점) ①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청구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9조의 4(석사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교과목 수강)(조신설 2019.6.1.)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대학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 이내에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를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9조의 5(타 학과 교과목의 수강)(조신설 2023.11.1.) 학생은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후, 소속대학원내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할 수 있는 학기당 학점은 소속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학문 성격이 유사한 학과 간에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목은 소속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제41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해당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의 학점인정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10.1.1.)

시험 및 성적

제47조(성적의 취소)

재학생은 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수료

제50조(과정수료) ①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업연한(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과정수료를 인정한다.

②수료성적은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한다.

종합시험

제58조(종합시험) ①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의 습득 정도를 평가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2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미술사학과-2과목)

③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18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이수한 자

2.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④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소정의 시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목별 20000원)

⑤ 종합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61조(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예정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소정의 논문지도과목을 이수 또는 이수예정인자(해당 대학원에 한함)

4. 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을 받은 자

제62조(논문 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은 5월 또는 11월에 제출한다.

제63조(논문 제출부수.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와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학위청구논문 5부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졸업

제75조(학위수여)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휴·복학]

> 일반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미복학,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당한 경우 재입학을 한다면 다시 3회의 휴학이 가능합니다. 단, 모성보호,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병휴학 역시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신청 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휴학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성보호 휴학의 경우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복학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1) 학생 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Myiweb)에서 신청 (1월, 7월 중순)
- 2) 휴복학원서 제출을 통한 신청

> 신입생의 경우 일반휴학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합격자안내문에 명시되어있으며, 일반휴학 중 **질병휴학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신입생도 휴학할 수 있습니다.**

[수강]

> 수강 신청은 최대 9학점까지 가능합니다.

타대학원 수강신청은 한 학기 3학점, 재학 중 12학점까지 가능.

학부 수업은 6학점까지이며 학점인정 가능함.

>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기간에 Myiweb에서 본인이 신청 또는 수강신청원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
- 타대학원 및 학부수업 수강신청 방법 : 소속 외 교과목 수강신청원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

[교내 장학]

> 장학 종류 및 대상자, 제출서류에 관해서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종별 | 대상 | 제출 서류 | 비율 |
|------------------------|--|--------------------|-----------|
| 총장 특별장학 |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 | 장학 신청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 1종 : 100% |
| 교육조교 장학 | 1. 행정부서 조교 (1종) 2. 전임교원 배정 교육조교 (2종) | | 2종 : 50% |
| 대학원장 특별장학 | 1. (문화예술) 원우회장 (1종) 2. (문화예술) 원우회 부회장 (2종) | | 3종 : 40% |
| 동문장학 | 명지대학교 졸업생 | | 1종 : 100% |
| 동종장학 | 학과와 동일계통 업계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 | | 2종 : 50% |
| 현직교사 및 공무원 장학 | 초, 중, 고 현직교사 및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해당 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자) | | 1종 : 60% |
| | | | 2종 : 30% |
| | | 3종 : 20% | |
| | | | 20% |
| | | | 20% |
| | | | 20% |

> 장학금은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지급됩니다.

> 2개 이상의 교내장학금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교내장학금은 중복지급이 불가능** 여기서, 교내장학금은 발전기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장학을 말합니다.

[종합시험]

>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 재학생 또는 수료생 & 18학점 이상 취득 & 평점 3.0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학생이 3월, 9월에 신청하여 4월, 10월에 실시합니다.

> 각 과목당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며, **문화예술대학원은 2과목** 모두 합격하여야 최종 합격

[졸업방법 선택]

> 4학차 학생들은 특정 기간에 졸업 방법을 선택해야 함. (필수)

수기로 졸업방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

> 4학차 때 졸업방법을 선택했던 5학차 및 수료생들이 졸업방법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졸업 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단, 논문졸업에서 학점졸업으로만 변경이 가능**

[성적]

> 특수대학원은 **절대평가**입니다.

> 대학원에는 성적포기제도가 있으며, C+이하의 성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학적]

> 특수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졸업방법 | 수료 요건 | 졸업 요건 |
|------|--|--|
| 논문 | - 5학기 이상 등록 - 24학점 이상 취득 - 평점 3.0 이상 | - 5학기 이상 등록 - 24학점 이상 취득 - 평점 3.0 이상 - 종합시험 합격 - 논문지도 1P - 논문심사 합격 - 논문 최종본 제출 |
| 학점 | | - 5학기 이상 등록 - 종합시험 합격 - 30학점 이상 취득 - 평점 3.0 이상 |

> 졸업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하며, 수료생 상태로 남습니다. 다만 학점 취득을 추가로 해야하는 경우는 초과 학기생이 됩니다. 수료생과 초과학기생의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구등록]

> 5학기를 채웠으나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상태로 남은 경우, 졸업을 하기 위한 나머지 조건(종합시험, 논문제출, 학점이수 등)을 완료하기 위해 연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구등록에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으나, 종합시험 신청, 논문심사 신청 등의 비용은 납부해야 합니다.

> 단, 학점이 부족하여 추가로 수강을 하려는 경우 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3학점 이하로 신청 시 등록금의 반액, 4학점 이상은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학 사 일 정

| 일 정 | 세 부 내 용 | 비고 |
|-----------------------|---|----|
| 3. 1.(수) | 3.1절, 학기 개시일 | |
| 3. 4.(월) | 2024학년도 1학기 개강 | |
| 3. 4.(월) - 3. 8.(금) | 수강신청 최종 변경기간 | |
| 3. 4.(월) - 3. 15.(금) | 장학금신청서류 제출기간 | |
| 3. 18.(월) - 3. 22.(금) | 종합시험 원서접수 기간 | |
| 4. 10.(수) | 22대 국회의원 선거 | |
| 4. 15.(월) - 4. 19.(금)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 |
| 4. 15.(월) - 4. 19.(금) | 종합시험예정(대학원별 시험일자 별도 공고) | |
| 4. 15.(월) - 5. 3.(금) | 졸업방법(변경) 신청서 제출(4,5학기 재학생) 및 지도교수제청서 및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4학기 재학생) | |
| 5. 5.(일) - 5. 6.(월) | 어린이날 (대체휴일 포함) | |
| 5. 15.(수) | 석가탄신일 | |
| 5. 27.(월) - 6. 7.(금) | 1학기 강의평가기간 | |
| 6. 6.(목) | 현충일 | |
| 6. 10.(월) - 6. 14.(금) | 1학기 기말고사 | |
| 6. 10.(월) - 6. 21.(금) | 최종 성적입력 기간 | |
| 6. 14.(금) | 학위청구논문 심사마감기간 | |
| 6. 17.(월) - 6. 20.(목) | 공휴일로 인한 수업보강(기말고사) 기간 | |
| 6. 17.(월) - 8. 30.(금) | 하계방학 | |
| 6. 24.(월) - 6. 26.(수) | 1학기 성적포기 및 성적이의신청기간 | |
| 7. 8.(월) - 7. 19.(금) | 휴학 및 복학신청기간 | |
| 7. 12.(금) | 석사 학위청구논문(최종본) 제출 마감 | |
| 7. 29.(월) - 8. 2.(금) | 하계 집중 휴무기간 | |
| 8. 12.(월) - 8. 20.(금) | 2학기 수강신청기간 | |
| 8. 15.(목) | 광복절 | |
| 8. 19.(월) - 8. 30.(금) | 2학기 등록기간 | |
| 8. 20.(화) |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



- ① 종합관 (=구 본관)
- ② 학생회관
- ③ 미래관 (=미래교육원, 미래융합대학)
- ④ 국제관 (=구 경상관)
- ⑤ 행정동
- ⑧ 생활관
- ⑨ 방목학술정보관 (=도서관)
- ⑩ MCC관 (=신관)

* S(서울캠퍼스) + 건물 번호 + 층수 + 호수
 ex) S10303 : S10 (MCC관) 3층 03호